

5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작성: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일시: 2011년 11월 9일

1. 개괄

2011년 10월 8일~9일 '5차 희망의 버스'는 정리해고·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해 부산으로 가을소풍을 떠났다. 5차 희망버스 참가자 4000여명은 10월 8일 오후 6시 부산역에서 문화제를 열고 영도조선소로 가려 했으나, 경찰에 막혀 영도다리를 넘지 못했다. 경찰은 3,4차 희망버스 때보다도 강경한 진압을 시도해 59명을 연행하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근접 거리에서 살포하는 등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부산역과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차량검문과 불심검문, 거리감금 등을 했다.

'5차 희망의 버스'에서도 경찰은 △중복집회를 이유로 희망버스에 대한 집회금지통보 △차벽과 채증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거리 불법감금 △과도한 해산명령 경고방송으로 참가자들 위협 △참가자들 대량 연행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이용한 강제해산 △출석요구서 남발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 5차 희망버스 공식 일정

10월 8일(토) 전국 각지에서 출발

18시 부산역 도착

20시 퍼레이드 시작

21시 남포동 도착

22시 두 번째 퍼레이드 시작

23시 85호 크레인 앞 도착

10월 9일(일)

07시 일어나서 아침 식사

08시 가을운동회

10시 각자의 자리로 출발

2.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중복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보는 집회내용에 따른 차별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버스'(아래 희망버스)는 평화로운 행사를 거듭 천명하며 10월 5일 오전9시반에 부산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신고를 제출했으나 당일 오후 4시경 서울로 올라오는 오후에 경찰로부터 보완통보를 받았다. 경찰이 보완을 하라고

한 주요내용은 1)중복집회라는 것(집회신고를 낸 모든 곳에 중복집회가 되어 있다고 함) 2) 주요도로라서 교통에 불편을 주니 다른 도로로 행진코스를 바꾸라는 것, 3)야간시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일몰 전으로 바꾸라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희망버스는 경찰의 보완통보 요구에 따를 수 없었다. 중복집회는 시간대를 달리해서 한다면 충분히 부산역 광장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집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면 이미 일몰 이후라서 일몰 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집회 주최측이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님에도 경찰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 보완을 하라면서 24시간 안에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0월 7일 금지통보를 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¹⁾, ‘한진중공업 외부세력 개입 반대 부산 범시민연합’(위원장 최상기)은 10월 8일 부산역 집회를 허가 받았다. 애초 부산역은 항운노조가 미리 집회신고를 낸 곳이지만, 범시민연합이 항운노조의 집회 철회서를 들고 경찰서에 왔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80개 중대 6500여명을 부산역과 봉래동로터리 등에 집중 배치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5차 희망버스를 가을소풍으로 잡고 부산역에서 한진중공업까지 평화롭게 거리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원천봉쇄로 남포동 거리에서 멈춰야 했다.

경찰은 형식적으로는 중복집회에 따른 금지통보라고 주장하지만, 실재로는 희망버스를 ‘불법집회’로 단정 짓고 집회에 대한 사실상 사전검열을 한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용을 갖고 집회를 할지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할지는 집회주최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신고제에서 경찰의 역할은 평화롭게 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는 등 주최측과 서로 협력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신고제의 형식을 띠면서 사실상 경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지통보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허가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동일 장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회가 개최될 경우, 경찰은 또 다른 집회에 대해서 금지통보를 한다. 경찰은 형식적인 선착순 절차로 집회신고를 받아 1초라도 늦게 집회신고를 한 경우 금지통보를 하는 데,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집회의 내용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²⁾ 집시법 8조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면 두 상반된 집회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집회가 충돌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희망버스기획단이 신고한 한 집회에 대해서 중복집회를 이유로 금지통보하고 이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를 했다. 반면,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집회에 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10월 8일 부산역 광장 봉쇄, 차량 검문 검색과 이동, 주차 제한

1) 오늘 '희망버스' 전면 차단... 충돌 긴장감
경찰, 영도 등 7곳 집회불허...부산역도 보수단체가 선점(국제신문 2011/10/7)

2) 김종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 실태와 대안” 자료집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 45~46쪽

① 부산역 광장 봉쇄

10월 8일 오후 6시경 부산역 앞에 도착한 희망버스 참여자들은 어떤 표현행위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10월 8일 부산역 광장에 경찰버스 10여대를 주차시키고 경찰력을 주둔시켰으며 부산역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불심검문을 했다. 또한 부산역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이동을 제한했다. 경찰 측이 친 폴리스라인은 부산역 광장 전체를 둘러싸아서 부산역 광장은 희망버스 참가자의 접근이 원천 차단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선 미리 집회 신고를 낸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10월 8일 오후 3시 부산진역 광장에서는 ‘MB정권 심판 민중대회’가 열렸다. 희망버스를 지지하는 행사로 당초 부산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보수단체의 부산역 선점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오후 4시경부터 경찰은 부산역 도로 1개 차량을 막아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부산역 광장을 둘러싸았고 정복을 입지 않은 경찰들이 부산역 인근에 배치되었다. 이 때문에 부산역 근처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한편, 오후 3시 부산역에서 ‘한진중공업 외부개입세력 반대 부산범시민연합’을 진행한 보수단체는 밤 9시20분쯤 영도조선소로 가는 길목인 영도 봉래동교차로 이동, 희망버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후 6시쯤 버스를 타고 온 어버이연합 200여명이 합류하면서 인원은 1000명으로 불었다. 봉래동 교차로는 희망버스 참가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사진설명] 경찰이 5차 희망버스 행사를 불허한 가운데, 10월 8일 행사가 예정된 부산역 광장에 안전펜스가 쳐 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사진설명] 10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5차 희망버스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버스를 이용해 부산역 광장을 차지하며 원천봉쇄에 나섰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사진설명] 10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했다.(사진제공: 인권침해감시단)

② 차량 검문검색과 불심검문, 이동제한

5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유난히 차량 검문, 승객 불심검문, 이동제한을 과도하게 진행했다. 경찰은 희망버스로 추정되는 버스를 정지시켜, 차량을 수색하거나, 버스를 쫓아 오기도 했다.

◎ 사례

10월 8일 오후 7시경 부산시내 터널 진입 전 경찰이 차를 세운 후 버스에 올라 신문을 밝히고 검문을 요구했다. 검문이유를 묻자 불법시위 관련해서 검문을 한다고 했고 우리에게 어디가냐고 물어봤고 잠시 차량 화물칸 수색을 요구했다. 경찰은 화물칸 수색 후 버스를 통과시켰다.

[진술: 승객 J씨]

◎ 사례

2011년 10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검문을 요청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며 버스 문을 열게 하고 짐칸을 열어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왜 보여주어야 하느냐"고 묻자 "혹시 불법시위 용품이 있을 지도 모르니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불법시위 용품도 없고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고 물으니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하고, 여기에 응하셔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해 검문을 거부하고 버스 출입문을 닫았다. 잠시후 버스는 출발했다.

[진술: 무지개 버스 나영 씨]

◎ 사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3시 부산진역에 예정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금속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로 부산진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톨게이트(대동톨게이트) 전 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차량내부검문을 하겠다고 차를 세웠다. 탑승자들이 거부를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 결국 검문을 받지 않고 목적지로 다시 출발했다.

마지막 톨게이트인 대동톨게이트에서 경찰이 검문을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차의 트렁크를 열었다. 일방적인 통보에 탑승자들이 항의했고, 20-30분간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었다.

부산역이 아니라 부산진역에 가는 것이라고 했으나 경찰은 부산역에 불법집회가 예상되어 안된다 고 했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했다.

당시 차량을 막고 통행을 제지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었다.

경찰은 경찰차가 오면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탑승자들이 항의를 하고 경찰차가 온 뒤 출발하였으나 안내를 하지는 않았고 뒤따라 왔다. 결국 오후4시가 다 되어 집회에 도착했다.

[진술: 금속 서울지부 최상천 씨]

경찰의 과도한 불심검문과 이동제한으로 대개 영도조선소로 향하는 길이 막혀 갈 수 없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기도 했다. 제한적으로 일부 사람들만이 85호크레인에 도착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날 9일까지 이어졌다.

◎ 사례

10월 8일 영화인들은 해운대 노보텔호텔 앞에서 희망버스 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버스와 봉고 등 3대의 차량으로 영도조선소로 출발했다. 그러나 부산대교 앞에서 교통경찰이 차량을 막고 갓길로 이동해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운전자의 사진을 찍었다. 이에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은 내가 책임자이니 나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통경찰은 수신호를 할 수 있음으로 갓길에 차를 세울 것을 재차 요구하자 양기환 이사장은 다시 차량을 세우는 이유를 물었으나 교통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양기환 이사장은 교통경찰의 자의적 판단인지,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통경찰은 문을 열라는 요구만 했다. 15분 정도 실랑이를 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 수 있었다.

부산대교를 넘어 봉래동 로터리에서 배치된 병력과 마주치게 되고, 경찰기동대에 의해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경찰기동대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다. 뒷 차들이 갈 수 없으니 길 한쪽으로 이동해 세워놓고 얘기하자고 하여 옆으로 이동해 세우자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영화인들이 타고 온 버스가 부산대교를 넘어 영도로 진입하자 버스를 막아서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 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는다고 했다.

뒷 차들의 통행에 방해되니 길 한쪽으로 세워 놓고 얘기하기로 하여 이동하여 세우자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경비과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집회를 하러가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으며 불법시위용품이 있는지 차 내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영화인들이 무슨 불법시위용품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사하는 것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상당히 굴욕감을 느꼈다. 경찰은 조사를 받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했다.

영화인들은 잠시 논의를 한 뒤 책임자(정보과장)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 책임자는 다중이 무리를 지어 집회를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며, 이미 한진중공업 앞에서는 희망버스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있어 안된다고 했다. 영화인들은 자신들은 부산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며 인간의 양심으로 김진숙을 만나러 온 것이니 한 사람씩 간격을 유지하며 평화롭게 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화인들의 의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채증만 계속 하면서 위압감을 조성했다. 영화인들은 계속되는 채증에 항의했으나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화인들이 3명만 가겠다고 말하자 경찰은 대신 기자는 2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다. 이에 기자들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시사IN의 고재열 기자가 한진중공업 앞에서 주민들이 희망버스 반대를 집회를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렇게 40- 50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결국 영화인 중 3명만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진술: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양기환 씨]



[사진설명] 10월 8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희망버스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영화인들이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85호크레인으로 가다 경찰의 제지에 가로막혔다. 이에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이 경찰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경찰이 불심검문을 통해 집회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2007년 3월 10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려 한 농민을 경찰이 막자 농민은 입구를 막고 있는 교통순찰차 1대와 경비 지프차 1대를 파손시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1심 재판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두 농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 방해 형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야 한다"며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에 따르면 '범죄 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려지려고'로 한정하고 있는데 목전은 말 그대로 '눈 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데 집회 시간, 장소를 고려하면 '목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1심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3)

5차 희망버스 승객들은 김진숙 씨를 단지 만나러가려한 것뿐인데, 이러한 행위가 어떤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경찰은 아무런 설명없이 광범위하게 불심검문을 했고 이동을 제한했다.

○관련 자료: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도9794 판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③ 부산역인근 대성로에서 승객 거리 불법감금

10월 8일 저녁 5시 30분경 부산역근처 대명동사거리 인도에서 경찰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에워쌌다. 40여명 승객들은 화장실 출입조차 거부당한 채 약 한시간동안 경찰에 의해 불법 감금되었다. 승객들이 항의를 해도 경찰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해산하라"고 명령할뿐 묵묵부답이었다. 승객 중 일부는 경찰의 저지에 항의하며 포위한 경찰들 사이를 뚫고 나갔으나 경찰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은 이들을 연행하였다.

사방이 경찰과 벽으로 막혀 어느 곳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인도 위에서 경찰은 계속 "해산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불법적인 인도 통행방해를 중단하고 통행을 보장하라"는 승객들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경찰은 약 한 시간 정도 흐른 6시40분경 감금을 풀고 길을 열어주었으나 부산역으로 통하는 인도 곳곳에서 계속 길을 막았다.

3) 경찰의 집회관리의 문제점, 13p, 자료집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토론회, 경찰청



[사진설명] 10월 8일 저녁 5시 30분경 부산역근처 대명동사거리 인도에서 경찰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거리에서 에워쌌다. 40여명 승객들은 화장실 출입조차 거부당한 채 약 인도에서 경찰에 의해 감금되었다. [사진: 인권침해감시단]

◎ 사례

10월 8일 5시 30분경 부산역 인근 대명동 사거리에서 승객들이 하차했으나 하차 후 채 3분도 되지 않아 경찰들이 버스 주변과 인도를 가로막고 승객들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승객들은 하차 후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짐을 들고 개별적으로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승객들이 이에 항의하며 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해산하라"고 명령하였다.

승객 중 일부는 경찰의 저지에 항의하며 포위한 경찰들 사이를 뚫고 나갔으나 경찰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은 이들을 연행하였다.

사방이 경찰과 벽으로 막혀 어느 곳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인도 위에서 경찰은 계속 "해산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불법적인 인도 통행방해를 중단하고 통행을 보장하라"는 승객들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감금된 가운데 항의를 계속하다가 승객들이 인근 경찰서에 항의전화를 동시에 걸기 시작하자 결국 약 한 시간 정도 흐른 6시40분경 감금을 풀고 길을 열어주었다.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린 이후 경찰이 인도 위에서 불법 감금을 했다가 다시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 내내 발생했다. 단 한 명도 인도나 도로로 행진을 하거나 도로에 나가지 않았으며 경찰이 인도를 막기 전까지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도 전혀 없었다.

[진술: 무지개 버스 나영 씨]

◎ 사례

버스에서 40여명의 희망버스참가자들이 수차례 내리려고 했지만 경찰의 방해로 3블럭 이상 지나고 나서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내리긴 내렸지만 저희가 내린 방향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부터 이미 경찰병력이 진을 치고 있었구요. 내려서 짐을 풀고 이동하려는 찰나 신호등을 건너 수십여명의 경찰병력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이 운영하시는 주차장에 강제로 가뒀놓고 못나가게 하였습니다. 주차장 주인분께서는 경찰분들께 사유지에서 뭐하시는거냐면서 항의했지만 무시당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나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들과 충돌했구요. 그러면서 경찰대오가 조금 무너져 4~5명정도의 참가자분들이 뛰어나가셨는데 나가는 도중에 몇몇 분들을 잡으셨고 제 눈앞에서 한 분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고 한분은 지나친 목졸림 (헤드락)을 당하시길래 제가 지휘자한테 가서 "다친다구요 목조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며 전경분을 떼어내려고하자 그분이 절 왼팔로 밀쳐 내시면서 "아이씨발 저리 비키세요"하며 밀쳐냈습니다.

그래도 환자가 먼저인바, 계속 놓으라고 하니 결국 놓고 그냥 그대로 연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대오를 갖추면서 주차장에 가뒀구요. "저는 의료지원을 하러 나온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환자분 보게 해주세요 아까 넘어지셨잖습니까 목도 조르시고" 하면서 수차례 요청했지만 듣는둥마는둥이었구요. 계속해서 요청하다 안되서 "그럼 경찰서에 전화해서 신원확인 되면 내보내 주실 겁니까?" 라고 요청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허"하는 장난스런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결국 제 학생증을 꺼내서 "저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학생증 보세요 학생증이라도 보시고 말씀하세요" "환자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며 수차례 다시 항의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경분이 캠코더로 채증하셨습니다. 채증하는게 어이가 없어서 "저 찍으시던 말던 상관은 없는데요 저 좀 빼 주실래요? 환자 좀 봅시다" 하면서 부탁했는데도 못나갔습니다. 결국 경찰고위관계자(?)분이 직접 오셔서 나갈 수 는 있었는데 그 뒤로 환자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못했습니다.

[진술: 5차 희망버스 의료지원팀 주은규 씨]

④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 연행

저녁 6시경 부산역 인도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연행자가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부산역 맞은편 초량 외국인거리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영도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인도를 가로막아서 결국 참가자들은 뒷골목을 이용해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저녁 8시 15분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 남포플라자 앞 사거리에서 난장 문화제를 시작하려던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막으면서 연행자. 부상자가 발생했다. 난장 문화제를 위해 방송차량 주변에 모여 있는 시민들 사이로 경찰이 해산방송 없이 수백 명의 경력을 투입해 방송차 탈취를 시도했다. 경찰은 아무런 경고방송 없이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으로 방패를 밀고 들어와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또다른 경찰을 향해 참가자들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애, 애, 애 연행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인권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인권활동가의 경우 참가자들이 연행된 버스 앞에서 경찰을 향해 "연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요구하자 공무집행방해죄로 답변했고 심지어 경찰은 연행자에 대한 현장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경찰의 마구잡이식 연행은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 부산 남포동을 찾아온 시민들에게도 향했다.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가 아닌 시민들을 연행한 후 풀어주기도 했다.



[사진설명] 10월 8일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이 연행되었다.

◎ 사례

10월 8일 오후 7시 30분경 5차 희망버스 참가자는 남포동 BIFF광장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병력과 집회참가자 사이에는 100m이상의 거리가 있었고,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은 집회참가자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7시 50분경 경찰병력이 참가자 쪽으로 밀고 들어와 참가자와 경찰병력사이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경찰병력의 폭력 진압방식에 연행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는 이를 항의하고 상황에 대한 확인을 남기고자 집회참가자의 앞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8시경 구레츠미화당의 반대편에서 집회참가자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하려 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병력과 집회참가자 사이에서 이동하려던 도중 갑작스럽게 경찰병력이 참가자들에게 밀고 들어왔고 이 와중에 경찰이 팔과 어깨를 붙잡고 경찰병력 사이로 고집어 내어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부산경찰제2기동대의 경찰 3인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공무집행 방해라며 연행을 하려 하였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자 인권침해감시단은 경찰을 때려도 되냐고 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타감시단이 미란다원칙 고지는 왜 안하냐고 항의하자 지금 하면 된다고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호송차로 탑승시켰습니다. 호송차에서 누가 공무집행방해를 했냐고 하며 폭행당하는 사람은 누구이나 라고 물어보자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중 1인이 자신이 3보 뒤에서 목격하였으며 피해자는 확인해보아야 한다면서 당시 호송차에 있던 경찰에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호송차에서 경찰에게 변호사 접견권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측에서 경찰서 가서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 하였으며 차로 들어오려는 변호사의 몸을 밀쳐내며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접견권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변호사접견을 허용하였고 이후 기장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⑤ 남포동 사거리- 물포 살수, 스프레이 살포 및 대량 연행

참가자들은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에서 남포동 사거리로 이동했다. 남포동 사거리는 영도대교 입구로 향하는 길로 연행자 대다수는 이 장소에서 발생했다. 10월 8일 밤 10시 50분께 참가자들이 영도조선소를 향해 2차 평화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은 살수차 3대와 수천 명의 경력을 동원해 이들을 저지하고 나섰다. 수차례의 해산방송(불법집회 및 야간시위)을 한 경찰은 곧바로 물대포를 쏘고 근접거리에서 캄사이신을 쏘며 연행 작전에 돌입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의 무전기에서는 “장애인, 여성은 붙잡지 말고 뒤를 보고 있는 사람만 끌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지만, 현실을 달랐다. 경찰은 남포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토끼몰이식으로 참가자들을 밀어붙였고, 참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연행자 중에는 뇌병변 장애인 2명, 칼라티브(TV) 기자 2명, 인도에서 대치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도 있었다. 칼라티브(TV) 취재진의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시민들이 진압 당하는 상황을 촬영하다 1명이 연행됐다. 취재진 중 한 명인 ‘크롬’(필명)씨는 연행 직후 통화에서 “경찰이 지금 저한테 ‘한 번 더 전화 받으면 전화기 뺏겠다’고 한다”며 연행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설명]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5차 희망버스 행사가 열린 8일 오후 부산 중구 남포동 광복로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시민이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한겨레 류우종 기자



[사진설명] 10월 8일 경찰이 진압하면서 밀려난 참가자들이 다수 넘어졌고 넘어진 참가자

들을 연행했다.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사진설명] 10월 8일 부산 중구 남포동 광복로에서 경찰이 차도에서 골목 안으로 후퇴하고 있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쫓아와 캬사이신을 쏘며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한편, 경찰은 근접 거리에서 캬사이신을 쏘며 토끼몰이식 연행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중 한 사람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되었다.

◎ 사례

■성명 : 불상

- 롯데백화점 앞(시위장소의 건너편)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23:55경)
- 주변 차도에 전경버스가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 10여명이 부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경찰은 연행자를 인계받았을 뿐이어서 경위는 모른다는 반응. 119구급차를 불렀고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라고 함.
- 2차 연행 시 연행된 사람으로 추측됨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로 추정, 부상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통화하는 것을 오렌지님이 들음)
- 24:00경 도착한 응급대원은 과호흡증후군으로 보인다며 앰블런스(72루1191)로 이송
-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새벽2시경 치료를 끝냄.

■성명 : 김정성

- 위 부상자가 넘어져있던 주변의 경찰버스(72무1944)에 연행된 채로 발견(24:00경)
- 연행 중에 넘어졌는데 경찰 10여명으로부터 밝혀서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버스 창문을 통해 증언

[진술: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침해감시단]

10월 8일 밤 23:50시경 참가자들은 인도까지 밀렸고 다시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으로 이동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연행자는 59명이며 이들에게는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⑥ 소결

10월 8일~9일 5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집회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쏟아내어 참여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나눈 '불법집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집회 자체를 억제하거나 집회참가자들을 강제해산했다. 5차 버스에서 경찰은 버스에 올라 차령검문과 승차자에 대한 불심검문, 인도에서조차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심지어 거리에서 감금을 시켰다. 이런 양상은 5차 희망버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찰력의 특징이다.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근접거리에서 캡사이신을 분사했으며, 59명이나 대량 연행했다. 특히 연행자 중에는 인권감시단과 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시민들을 희망버스 참가자로 오인해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의 공격적인 공권력 행사는 사법부의 판결이나 인권의 원칙이나 가치는 아랑곳 하지 않고 희망버스를 불온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는 왜곡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 사전적으로 집회를 통제하고 심지어 거리에서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찰의 집회관리는 지나치리만큼 과도하다.

3) 10월 9일 : 불심검문과 이동제한

10월 9일 경찰은 아침 7시경 150여명 가량 병력을 투입해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 서쪽에서 차도로 진입하면서 적치물 이동을 요구했고 참가자들을 인도 쪽으로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연행자나 충돌은 없었다. 아침 7시 5분경 경찰은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 사거리로 진입해 7시 15분경 사거리를 봉쇄했다.

10월 9일 아침 7시 45분경 경찰은 영도 봉래사거리에서 한진조선소 방향 양편에서 검문했고 차도의 택시 통행을 금지하고 우회하도록 요구했다. 인도에서는 이동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참여자들은 경찰봉쇄로 영도대교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부산역으로 이동했다.



[사진설명]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영도대교와 봉래사거리에 집중배치 되어있던 경찰은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아 섰다. 경찰은 버스와 택시를 검문검색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로 보이는 시민들을 선별해 내어 접근을 차단하는 등 철통방어를 했다. 참세상





[사진설명] 부산 영도 봉래동 로타리에서는 희망버스가 진행된 10월 8~9일 양일간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 중 일반차량을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와 택시를 차단하고 있다.
시사코리아©정의철 기자

4) 연행자들 조사과정과 면회

10월 8일 59명 연행자들은 각각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10월 9일 상을 겪은 사람 1인과 장애인 2인이 석방되었고, 나머지 56명은 48시간 후 10월 9일 저녁 6시경 석방되었다. 연행자 59명에게는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중 1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연행자 조사와 면회 과정에서 경찰은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 사례

◦ 김아무개(58·교사)씨는 “밤 사이 연행자를 면담하러 동래경찰서를 방문했는데 서장이 막무가내로 면회 신청자들을 막아서고 불법 채증을 지시했다”라며 이번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을 규탄했다.

[출처:한겨레 신문

2011.10.0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9869.html]

◦ 지난 새벽 인도에 있다 연행 되었다 풀려났다고 밝힌 참가자는 "어제 삼촌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풀어 주었다"고 석방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체포과정에 대해 "어제 체포가 되면서, 변호사 선임할 권리를 주장했었다.'변호사 올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곤하다. 언제 올지 모르니 조사에 응하라며, 다그치듯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그리고 경찰은 '목비권 행사하면 다 잡아넣겠다'고 했다. 시민분들이 목비권을 행사했다. 그랬더니, 경찰이 '다날어버려'라고 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고압적 자세로 진술을 강요했다고 규탄했다.

연행된 동행자 면회를 갔다 경찰이 막아 하지 못한 울산 참가자는 "연행된 동행자를 면회하기 위해 봉래경찰서에 면회를 시도했지만 경찰이 막아 면회를 할 수 없었다"며, 면회 결과를 설명했다. 이 참가자는 연행된 동행자에 대해 "그 분은 인도에 서 있다가 경찰이 쓴 물대포가 너무 강해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 쪽으로 갔다가 연행 됐다"며, 연행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성토했다.

면회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면회를 갔더니, 정문이 병력으로 막혀 있었다. 면회를 하러 왔다고 방문이유를 말했지만 경찰은 무조건 막아섰다. 그래서 면회 규칙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복을 입은 경찰이 채증한다며, 사진을 계속 찍었다. 우리는 경찰서 밖에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한발자국 더들어오면 연행해'라고 말 도안되는 지시를 내렸다"며 "경찰이 불법 채증과 공갈협박 했다"고 말했다.

[출처 : 참세상

2011.10.09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463>]

◎ 사례

20여명 정도가 희망버스 다음날 오전 해운대 경찰서로 이동했고, 자갈치역에서부터 초록색 점퍼를 입은 사복형사가 저희들을 미행했습니다. 연상동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이동할 때까지 있다가 저희가 이동할 때 같이 타지 않고 전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심증입니다. 해운대경찰서로 도착하니 주황색 모자를 쓴 경찰병력이 상당히 모여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고착시켰습니다.

주황색 모자를 쓴 경찰들에게 면회를 하러 왔다고 거듭 설명했으나, 듣지 않았고 면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해산하지 않고 있으면 연행한다고 경고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켓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경찰서 지능팀 형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5명이 들어가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 모자를 쓴 대장이 와서는 면회는 1명만 된다고 하고 다짜고짜, 위협을 하자 오히려 저와 얘기했던 해운대 경찰서 지능팀형사가 와서 됐다고 빨리 5명 오라고 저희들을 데려가주었습니다.

[진술 : 승객 J씨]

5) 출석요구서 남발과 경찰신원확인복장 미착용

5차 희망버스에서도 채증을 통해 확보한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피내사자’ ‘피의사건 대상자’ ‘참고인’ 등 이라는 형식으로 시민을 소환하고 있다. 경찰은 2~4차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한편, 5차 희망의 버스기간동안 경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설명] 10월 8일 남포동 부산국제영화제(BIFF)광장에서 경찰들이 있다. 이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서 이름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인권침해감시단]

○ 관련자료

63. 특별보고관은 진압 경찰의 폭력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청의 노력을 알고 있으나,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보고관은 경찰력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모든 혐의를 독립적 기구가 즉각적이고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64. 특별보고관의 방문 이후로, 모든 경찰복에 배지가 이름표가 부착되고, 경찰의 보호 헬멧을 착용한 경찰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

-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아래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Prank La Rue」 유엔 문서 번호: A/ARC/17/27/Add.2) 중 집회의 자유

3. 마치며

4차 희망버스이후 경찰은 물포사용기준 완화, 도로에서의 시위의 즉시 해산 및 이동속도 제한, 소음측정방법개정을 통한 소음규제 강화라는 일련의 새로운 집회관리지침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현재 집시법과 집회관리지침도 가뜰이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어서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에서 비난이 일어남에도 경찰은 더욱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요란한 구호 뒤에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관리지침은 철회되어야 하고 5차 희망버스에 나타난 경찰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성찰하며 헌법에 기초한 경찰력이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희망 버스' 에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

경찰이 해야 할 5가지

1. 집회금지통보를 철회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것.
2. 신뢰와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공무집행을 위해 경찰의 신원을 표시할 것.
3.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불온시하지 말고 경찰은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대화할 것.
 4.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이동을 위해 노력할 것.
5.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조사하고 사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

경찰이 해서는 안 될 10가지

1. 불심검문을 통해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가로막지 말 것.
2.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으로 위협하지 말 것.
 3. 차벽을 설치하지 말 것.
 4. 최루액을 탄 물대포를 쏘지 말 것.
 5. 최루액을 분사하지 말 것.
 6.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연행하지 말 것.
 7.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채증하지 말 것.
 8.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때리지 말 것.
 9.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지 말 것.
 10.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말 것.